

임금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 [1심]	사건유형	임금
원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피고	○○○
판결선고일	2024. 4. 16.	비고	항소취하로 2024. 5. 29. 확정
사건개요	○ 원고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교육공무원으로서 전일제 직원들은 동일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이나 조건·절차가 동일함에도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약	○ 처우개선 수당항목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따르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 볼 수 없으며 애초에 통상근로자와 달리 취급한 경우라 볼 수 없다. ○ 수당성격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이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와 일괄지급하여야 한다면, 도리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통상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뿐일 것이다.		